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중 소 기 업 창 업 지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244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및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창업의 범위 명확화 및 확대(안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승계 방식의 사업 개시 형태를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하고,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는 등 창업의 범위를 확대함.

- 1 -

나. 공공기관 창업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마련(안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0까지 신설)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창업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목표 비율을 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발급하는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며,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동안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다.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위원 범위 및 기능의 확대(안 제8조의2 및 안 8조의3)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창업지원정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며, 창업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협의회 협의사항에 협업사업 등 공동 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3.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세분류”를 “세세분류”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상속 또는 증여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2.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추가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 또는 친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것
나.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할 것
4.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법인을 설립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을 소유하면서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이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제5조의6제1항제1호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비율)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8퍼센트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의9(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창업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으로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10(창업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증명서류 발급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창업기업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창업지원정책협의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창업지원기관의 임직원, 창업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8조의3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협업사업 등 공동 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담금 면제 해당 건에 대해 창업자를 대신하여 부담금 부과 기관에 부담금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제3호 중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및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에 관한 업무

제32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5제2항에 따른 제출·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1호	

1) 1차 위반		100
2) 2차 위반		200
3) 3차 이상 위반		300
나. 법 제9조5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1호	500
다. 법 제9조5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1호	500
라.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2호	
1) 1차 위반		100
2) 2차 위반		200
3) 3차 이상 위반		300
마.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2호	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영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으로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 ----- ----- ----- <u>않는</u> ----- ----- -----.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상속 또는 증여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추가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 또는 친족(「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것	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할 것
4.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법인을 설립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법인을 설립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을 소유하면서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5. 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을 소유하면서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제5조의6(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부장은 법 제4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	제5조의6(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 ----- ----- ----- <u>세세분류</u> ----- ----- -----.

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생략) ② (생략) <u><신설></u>	----- ----- ----- ----- ----- -----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 ----- -----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비용)</u>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8퍼센트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신설>	가공을 한 제품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용 이상의 구매목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u>제5조의9(창업기업의 확인 절차)</u>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으로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	-------------------	--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 요한 구체적 사항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10(창업기업 확인의 유효 기간 등) ① 법 제9조의4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 기간”이란 증명서류 발급일 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창 업기업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 년을 말한다. 제8조의2(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 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 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 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	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 람 각 1명 2. 창업지원기관의 임직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 <신 설> ④ (생 략) 제8조의3(정책협의회의 기능) 정 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협의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제29조의2(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② (생 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부, 해양수산부 2.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창업 지원정책협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창업지원기관의 임직원, 창업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 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정책협의회의 기능) -- -----. 1. ~ 7. (현행과 같음) 8. 협업사업 등 공동 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29조의2(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